

실용음악연구소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연구소(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)라 칭하며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)안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대중문화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부합되는 연구활동에 힘쓰며 대중음악을 본질적으로 심도 있는 음악인 육성과 음악교육 지원 및 컨퍼런스와 워크샵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실용음악에 관한 연구조사와 연구자료의 수집.
- ② 실용음악 관련 공연 개최.
- ③ 실용음악 전공 대상의 마스터클래스 및 컨퍼런스 개최.

제2장 임직원

제4조 (임직원)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소장 1인
- ② 전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 약간인
- ③ 간사 약간인
- ④ 조교 약간인

제5조 (자격 및 임명)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실용음악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전임연구원 또는 특별연구원은 소장의 재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6조 (임기)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직무)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전임연구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주어진 연구소의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, 특별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를 수행한다. 전임연구원은 간사를 겸직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
④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본 연구소의 제반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과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 정

제10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①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

② 외부의 연구 지원금

③ 기타

제11조 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2조 (승인 및 사업보고)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.

② 연구소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운영보고

2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

3. 연구소의 연구업적 수시보고
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①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②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
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